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91호 2023. 10. 18.(수)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215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사항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제5조 등)
- 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자로 명확화 (안 제7조)
- 다.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 선정절차, 위원의 위촉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 라. 사무국 및 간사 조항 삭제 (제10조)
- 마. 주민총회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 (안 제13조)
- 바. 자치계획안의 수립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 (안 제14조)
- 사. 위원 해촉사항 개정 (안 제22조)
- 아. 자치센터 기금 실비 지출가능 대상자에 ‘강사’ 사항 추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등 시상 근거 마련 (안 제26조)
- 자. 자치센터 기금 사용 대상에 주민자치회 운영사항 추가 (안 제29조)
- 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안 제34조)
- 카. 주민자치협의회 재정적 지원 사항 근거 마련 (안 제35조)
- 타. 주민자치회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36조의 2)
- 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절차 준수 사항 신설 (안 제37조)
- 하.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사항 명기 (안 제39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2, 팩스 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사항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제5조 등)
- 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자로 명확화 (안 제7조)
- 다.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절차, 위원의 위촉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 라. 사무국 및 간사 조항 삭제 (제10조)
- 마. 주민총회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 (안 제13조)
- 바. 자치계획안의 수립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 (안 제14조)
- 사. 위원 해촉사항 개정 (안 제22조)
- 아. 자치센터 기금 실비 지출가능 대상자에 ‘강사’ 사항 추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등 시상 근거 마련 (안 제26조)

- 자. 자치센터 기금 사용 대상에 주민자치회 운영사항 추가 (안 제29조)
- 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안 제34조)
- 카. 주민자치협의회 재정적 지원 사항 근거 마련 (안 제35조)
- 타. 주민자치회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36조의 2)
- 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절차 준수 사항 신설 (안 제37조)
- 하.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사항 명기 (안 제3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경제정책과와 합의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등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해당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22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2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3. 해당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에는 해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 선정 절차)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 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주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개 추천 및 선출 등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 선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출한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있으면 예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제8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개최하며”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제1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제19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있다. 다만, 임기 종료 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8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 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원”을 “지원 및 시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 등”을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를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회계책임자”로 한다.

-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9조, 제4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제37조 및 같은 조)을 삭제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34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중 “이외에”를 “밖에”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을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로, “정한다”를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기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상한선(제29조 관련)

구분		기 준	사용료 등 (범위 내)	비 고
과목				
각종 시설 (사용료)	다목적 홀, 회의실 등 (부대시설 포함)	2시간	3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산정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헬스장)	1개월	25,000원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	1개월	35,000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u>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u>관한</u> ----- ----- ----- ----- ----- ----- -----.</p>
<p>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5조(기능 및 권한)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u>제40조</u>-----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u>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u>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u>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u>----- ----- -----</p>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삭 제>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삭 제>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삭 제>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삭 제>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2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신 설>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

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3. 해당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에는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천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 선정 절차) ① 주민자치

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 이하의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주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개 추천 및 선출 등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 선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

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출한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있으면 예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제8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제13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 3. (생략)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생략)
- ③ ~ ⑧ (생략)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총회) ① -----  
----- 개최할 수 있으며-----  
-----  
-----  
-----  
-----.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5. (현행과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5. (생략)
-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

7. (생략)

② ~ ⑤ (생략)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종료 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제14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  
-----  
----- 수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정치적 중립) -----  
----- 특별법 제40조제5항 -----  
-----  
-----.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8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②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들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8조의2제2항-----  
-----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우

6.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제26조(운영) ① (생략)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9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29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생략)

2.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및 지역 체육대회 참가 지원

3. 4. (생략)

⑤ (생략)

제29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지원 및 시상

3.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동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③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  
-----  
-----  
-----.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⑥ (생략)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주민자치협의회)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⑥ -----  
-----  
-----  
-----  
----- 회계책임자 -----  
-----  
-----.

제3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주민자치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2(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8조의2, 제11

제6장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 운영

제37조(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서구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을 둘 수 있다.

제38조(감독) ①·② (생략)

<신설>

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조, 제13조, 제15조, 제29조, 제4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38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제34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등) -----

-----  
- 밖에 -----  
--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자치회의 의결을 -----  
-----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  
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215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수강료 환불 범위 세부기준 신설, 자치센터 운영경비의 집행범위, 강사수당 지급기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오기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 신설(안 제20조)
- 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기금사용 근거 마련(안 제21조)
- 다.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내용 중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6조)
- 라. 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안 별표 1)
- 마. 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바. 별지 서식 변경 (별지 제9호서식, 제12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제21호서식)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4, 팩스 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수강료 환불 범위 세부기준 신설, 자치센터 운영경비의 집행범위, 강사수당 지급기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오기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 신설(안 제20조)
- 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기금사용 근거 마련  
(안 제21조)
- 다.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내용 중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6조)
- 라. 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안 별표 1)
- 마. 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 바. 별지 서식 변경 (별지 제9호서식, 제12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제21호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경제정책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제1호 중 “프로그램 시작 전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환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최”를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3조의 자치센터 운영”을  
“제24조의 자치센터 기능”으로 한다.

2의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제22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제6호 중 “주민자치회 운영”을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운영”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제2호 관련)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운영된 강의에 대한 강사수당은 종전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조(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반환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제2호 관련)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반환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 2호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범위 내)	비 고
강 사	시 간 당 (1회 1시간)	35,000원	<p>○ 동일 강의 당 지급 한도액: 월 700,000원</p> <p>※ 동일 강의: 강사 및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p> <p>※ 1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의 100% 추가 지급</p> <p>예) 1시간 35,000원 / 1시간 30분 52,500원</p> <p>2시간 70,000원 / 2시간 30분 87,500원</p>



[별지 제12호서식]

문서번호	○○동 주민자치센터 호		<b>수 입 결 의 서</b>	
시행일자				
회 장		발 의	. . .	
회계책임자		장 수 부 등 재	. . .	
협 조	동 장	수입 연도	20 년도 수입	
	담 당			
결정액	금 원(금 원)			
납입인원	○○○외 명			
적 요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			

[별지 제14호서식]

<b>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b>			
신 청 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직업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취소내용	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		
	수강료 환불 해당 강좌명		
	전체수강료	학습비 징수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1개월 초과	반환사유 발생한 그 달의 반환 사유 발생일 <input type="checkbox"/> 그 달의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input type="checkbox"/> 그 달의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input type="checkbox"/> 그 달의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세부산출식 =		
취소사유			
환불신청액	금	원	
입금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b>인천광역시 서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b> ..... (질 취 선) .....			

<b>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b>			
신 청 인		생년월일	
환불결정액	원	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b>인천광역시 서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b>			

[별지 제15호서식]

# 지 출 결 의 서

○○ 동 주민자치센터 호			<b>지 출 결 의 서</b>					
회계책임자		회 장		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협 조		
				세 출 과 목		담 당		동 장
발 의	. . .	인	정책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단위		지출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세부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편성목		지급 명령 번호	제 호	인	
금 원(금 원)								
적 요								
채 주	주 소 :				계 좌 입 금			
	상 호 :				은 행 명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성 명 인                 </div>							
비 고								







3.·4. (생략)

5.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6. (생략)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3조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제외)

②·③ (생략)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기준에 따른다.

②·③ (생략)

제36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세부 운영세칙을 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 5.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

6. (현행과 같음)

7. -----  
----- 제24조  
의 자치센터 기능-----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① -----  
-----  
----- 별표 2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6. -----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

